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4.12.18]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4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강철우 의원 외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개정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
-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다. 위원의 임기 (안 제12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라. 위원회의 회의 (안 제14조)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아. 수당 등 (안 제17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민참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개정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01.01.시행)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대상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10조)
 -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사유 등을 규정
- 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라.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등을 정함(안 제12조 ~ 제16조)
- 마.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제1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정함(안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 해촉시 지도원증 회수 등 기록·관리
-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이 원칙.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가능
 -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 수행 부여
-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가치와 금연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개정이유

- 야간(18:00~24:00)진료 환경 및 질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야간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6조의2)
 -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야간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제안이유

○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 관련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점검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내 편입필지 및 면적 조정, 대상부지 취득 시기를 변경코자 함

○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터 정화사업 부지매입

희랑대사의 출생지와 우륵의 출생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희랑대사 생가복원과 우륵터 사당건립 사업 준비

○ 일반 재산 매각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함

○ 월천권역 종합 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인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내 편입되는 국유재산(경찰청) 보상협의로 등가이상의 관사 5가구 이상을 교환하기 위하여 사유시설 매수하여 교환코자함

3. 취득재산

○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6필지		2,574	171,900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979-2	답	226	14,400	2015	공영차고지 주차면적 부족에 따른 추가확보	이순이
		거창읍 대평리 998-2	답	518	35,800			정현석
		거창읍 대평리 998-1	답	393	34,300			이구섭
		거창읍 대평리 997-2	답	567	36,700			정현석
		거창읍 대평리 980-2	답	349	14,900			이근정
		거창읍 대평리 981-2	답	521	35,800			김영순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액	취득 및 변경 시기	취득 및 변경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당초면적	변경면적				
계				44,321	753,086	132,101			5명
취득 및 변경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5-8	임	28,329	5,784	1,807	2015	취득면적 변경(사업계획 변경)	표주숙외1
		가조면 수월리 산16	임	15,000	747,074	129,990	2015		용당소마을회 외5
		가조면 수월리 산25	임	595	595	181	2015		차정수
		가조면 수월리 산27	임	397	397	123	2015		정규언

○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터 정화사업 부지매입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토지	소 계		916	22,900	2014~2015	생가복원 및 정화사업 부지매입	
		주상면 성기리 1257	답	93	1,813			김재홍외 1
		주상면 성기리 1258	답	1,345	28,917			"
		주상면 성기리 1261	대	162	7,371			백낙영
		가조면 석강리 109	임	545	13,352			최재상의 2
		가조면 석강리 110	전	916	22,900			"

○ 일반 재산 매각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8,721	75,938			
매각	토지	거창읍 장팔리 1185-1	유지	2,493	11,289	2014	보존부적합 (소류지 용도폐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186-1	유지	1,438				
		거창읍 장팔리 1187-1	유지	2,238				
매각	토지	주상면 거거리 산78-3	임야	2,481	3,032	2014	보존부적합 (소류지 용도폐지)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산79-1	임야	8,811				
		주상면 거거리 산81-1	임야	2,229				
매각	토지	거창읍 동변리 952-1	답	4,516	33,779	2014	보존부적합	거창군
매각	토지	북상면 갈계리 1109-3	전	4,213	27,838	2015	보존부적합 (기업유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09-7	임야	72				
		북상면 갈계리 1109-8	임야	230				

○ 월천권역 종합 정비사업

가. 1취득재산의 표시(취득후 교환매각)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집합건물	대평리 1187번지 302호외 4건	대		감정평가액 이하 수의 계약으로 진행	2014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조성사업	김무중외 4인

나. 취득재산의 표시(교환후 사업편입)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63,397			
교환	토지	서변리552-2	대	1,603	183,811	2014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조성사업	국 (경찰청)
	건물	서변리 552-2		1층 88.14	24,385	2014		
	건물	서변리 552-2		3층 154.80	46,440	2014		
	지장물	서변리 552-2		나무등	8,761	201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 관련

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잔여부지 중 공특법에 의한 잔여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매입 및 활용을 통한, 부족한 화물공영차고지 주차공간 확보 계획으로서,

나. 공영차고지와 88고속도로 사이에 끼어 맹지화 되는 농지소유자들의 매입요구와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준비를 확보하여 자투리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확보(증 20면)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인 잔여부지 매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

가. 가조면 수월리 산 16번지 등 4필지에 당초 계획면적 44,321m²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매입 면적 753,086m²로 계획하게 되었음

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향노화힐링랜드 조성 계획 방침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대상지인 수월리 산 16번지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및 산림청에 사업 신청 계획임

다. 따라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지정시 대상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터 정화사업 부지매입

가. 거창군에 소재한 각종 유적을 복원, 정비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역사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 향토문화 사료를 후대에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신라말 고려 초승려인 희랑대사의 생가터를 복원하고 생초마을 우륵터에 사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따라서 주상면 성기리에 소재한 부지와 가조면 석강리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의 출생지에 사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일반 재산 매각

상기 10필지 토지는 소류지 용도폐지 보존부적합 토지(6필지, 14321m²)와 승강기 기업유치를 위한 보존부적합 토지(3필지, 27,838m²) 및 기타 보존부적합 토지(1필지, 33,779m²)의 일반매각 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매각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월천권역 종합 정비사업

가.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국유재산(경찰청)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나. 국유재산(경찰청)은 구 월천파출소로서 현재 관사로 활용되고 있어 등가이상의 관사용 5가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보상협약으로서 향후 사유시설을 매수하여 교환하여야 함

다. 따라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사유시설을 매입하여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2. 08.

2. 제안이유

○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 및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관련

- 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과 농기계임대은행 확장 등 농업관련 건축 행정수요 증가로 부지확충을 위한 사유지 매입 불가피
- 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공동시설 설치, 창업코칭 등 소규모 가공창업 종합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 북부권역(주상,웅양,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을 통해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편의 제공 및 정부 정책인 농기계 공동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

도심속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녹지공간(포켓공원)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주민 쉼터 조성으로 녹색도시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 및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관련

○ 부지 매입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2,602	46,037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59-13	답	1,997	35,147	2014~2015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	김영분
		거창읍 대평리 1365-22	답	605	10,890			이정우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지목	수량	취득시기	사업비	비고
취득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62	건물	1,000m ²	2015	1,600,000	

○ 북부권역(주상,응양,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983	21,416			
취득	토지	주상면 도평리 755	답	1,202	10,800원/m ²	2015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백재인
		주상면 도평리 7541	답	781	10,800원/m ²			백인찬

○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5필지		2,100	550,866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808	대	93	22,134	2015 ~ 2018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	변판식
		거창읍 대동리 815-1	대	70	17,626			장남순
		거창읍 대동리 788-1	창	262	63,901			조동석
		거창읍 대동리 787	전	168	81,362			정경효
		거창읍 대동리 758	대	368	94,576			김웅개
		거창읍 중앙리 2-13	답	82	17,015			김경희
		거창읍 대동리 819-3	대	73	46,486			변판식
		거창읍 대동리 819-5	대	63	44,730			진동영
		거창읍 상림리 31-45	대	93	29,499			주영경
		거창읍 상림리 31-47	대	148	46,945			홍덕순외4
		거창읍 상림리 71-3	대	66	14,975			김원순
		거창읍 상림리 72-1	대	22	4,569			김원순
		거창읍 중앙리 436-6	전	243	36,547			이상목
		거창읍 중앙리 449-11	전	192	16,780			이상학
		거창읍 중앙리 450-3	전	157	13,721			이상학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 및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관련

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농업관련 건축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공공청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3층 이내로 제한

나.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는 대평리 1359-13번지 외 2필지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한도 20%에 근접한 19.0%로서,

다.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비 등 부지확보가 요구되고, 도시 기반시설인 공공청사를 규격화(정형화)하여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라. 따라서, 농산물 가공 공동시설 설치, 창업코칭 등 소규모 가공창업 등 종합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관련 재산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 북부권역(주상,웅양,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편의를 위해 북부권역(주상, 웅양, 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나. 임대수요가 많은 권역에 우선 설치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북부권역 선정에 대한 핼비(FIMFY)현상이 발생할 우려 및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부족이 예상되나 향후 수요증가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신설이 필요함

라. 따라서,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증진 등 북부권역(주상, 웅양, 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재산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

가. 도시계획 시설이나 각종 공공시설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자투리땅을 방치함으로써 도심미관이 저해되는 우려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소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면 주민의 쉼터로써 활용도가 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